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8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 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 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농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생산량 증대 차원에서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감면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